

[박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심사 지침]

1. 연구계획서 의의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가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논문제출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2.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계획서에는 이를 심사할 심사위원이 연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하여 장차 진행할 연구목적, 내용, 방법,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등이 상세히 제시 되어야 한다.

3. 연구계획서 제출자격

박사 3차 학기(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4차 학기), 석박통합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는 연구계획서 제출자격을 얻게 된다.

4. 연구계획서 제출시기

박사 3차 학기(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4차 학기), 석박통합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직전 학기까지(*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이후 학기부터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5. 연구계획서 제출방법

- ① 대상자공지 및 제출안내 : 학과별로 제출자격 확인 후, 대상 학생에게 공지 및 기한 내 제출안내
- ② 심사비 납부 : 신청학생은 납부기한 내에 범용수납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사비 납부
- ③ 심사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제출 : 연구계획서 3부(심사위원에게 개별배부) 및 심사신청서 1부를 제출 기한 내 학과 사무실에 제출

6. 연구계획서 심사위원

- 심사위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총 3인)**
- **위원장은 지도교수 외 심사위원이 되며, 논문에 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 위원의 자격은 해당 관련분야의 권위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 연구계획서 심사위원은 추후 해당학생의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7. 연구계획서 심사판정

심사는 “可”, “否”로 정하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可”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8. 연구계획서 심사 및 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연구계획서 심사결과를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한다.

9. 연구계획서 연구진행

- 심사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한다.
- **연구진행 중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신청서, 변경요약표와 변경된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사안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성심대학원장